

안전보건관리규정

(주)화인

결		재		
담 당	검 토	부서장	임 원	사 장
				702
/	/	/		/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적용범위】	1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2
제5조【사고예방책임】	2
제6조【안전보건경영방침의 수립 등】	2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2
제7조【조직의 구분】	2
제8조【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등】	2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제10조【관리감독자】	3
제11조【안전관리자】	3
제12조【보건관리자】	4
제13조【산업보건의】	5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5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5
제16조【회의 등】	6
제17조【회의록 작성·보존】	6
제18조【회의 결과 등의 주지】	6
제19조【작업지휘자】	6
제3장 안전·보건교육	7
제20조【교육의 구분】	7
제21조【교육담당자】	7
제22조【책임】	7
제23조【정기안전보건교육】	7
제24조【관리감독자 교육】	8
제25조【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8
제26조【특별안전보건교육】	9
제27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9
제28조【교육강사】	9
제29조【교육방법】	10
제30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10
제31조【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	10

제32조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10
제33조 【교육주기 등】	10
제34조 【교육계획의 수립】	10
제35조 【교육관계 서류 보존】	10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11
제36조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11
제37조 【안전보건진단】	11
제38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등】	11
제39조 【성능유지】	11
제40조 【직원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	12
제41조 【안전인증】	12
제42조 【안전검사】	13
제43조 【안전검사의 주기】	14
제44조 【검사결과에의 조치】	14
제45조 【안전점검 및 순찰의 책임】	14
제46조 【안전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	14
제47조 【점검방법】	14
제48조 【점검결과에의 조치】	15
제49조 【안전기준】	15
제50조 【표준안전작업지침】	15
제51조 【안전수칙】	15
제52조 【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16
제53조 【작업중지】	16
제54조 【안전보건표지】	16
제55조 【중대산업재해 대응조치】	16
제56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 점검】	16
제57조 【종사자 의견 청취】	16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16
제58조 【건강진단의 구분】	16
제5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16
제60조 【진단결과에의 조치】	17
제61조 【작업환경측정】	18
제62조 【측정결과에의 조치】	18

제63조 【유해물질 취급부서】	18
제64조 【유해물질 표시】	18
제65조 【보호구착용 작업 등】	19
제66조 【작업복】	20
제67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20
제68조 【보건기준】	20
제69조 【보건기준】	20
제70조 【보건수칙】	20
 제6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21
제71조 【도급의 승인】	21
제72조 【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	21
제7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1
제74조 【수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21
제75조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22
제76조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22
제77조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 절차】	22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22
제78조 【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22
제79조 【긴급조치】	23
제80조 【비상연락망】	23
제81조 【사고조사 및 보고】	23
제82조 【재해분석】	23
 제8장 근골격계질환 예방	24
제83조 【근골격계질환예방】	24
제84조 【유해요인조사】	24
제85조 【유해요인조사 방법】	25
 제9장 위험성평가	25
제86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25
제87조 【위험성평가 교육】	25
제88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25
제89조 【위험성평가 주기】	25
제90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26

제10장 보 칙	26
제91조【안전·보건 제안】	26
제92조【표창】	26
제93조【징계】	26
제94조【상벌평가 기준 등】	26
제95조【문서기록 보존】	27
제96조【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27
제97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27
제98조【규정의 준수 등】	27
제11장 부 칙	27
제1조【시행일】	27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체제	28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29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명장	30
【별지 제3호 서식】 관리감독자 임명장	31

【제 · 개정 이력】

연번	제 · 개정일	제 · 개정 사유	비 고
1	2009. 09. 25.	최초 제정	
2	2022. 05. 24.	1차 개정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화인(이하 “회사”라 한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회사의 재산 보존도 및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임직원 및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 【안전·보건업무 우선】 회사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사고예방책임】 사업주와 전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공동 책임을 가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는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건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원활한 안전·보건 활동의 전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회사의 전 직원은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6조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수립 등】 ①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은 매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사업장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매년 안전보건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을 갱출 수 있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체계 마련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안전보건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조치하고,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7조 【조직의 구분】 ①회사는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라인(계선)조직과 스태프(참모)조직 및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 구분하며, 그 체제는 「별표 1」 과 같다.

②라인(계선)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둔다.

③스태프(참모)조직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며, 필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둘 수 있다.

④기타 활동상의 조직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위소방대 등 필요한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등】 ①라인(계선)조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지정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라인(계선)조직의 관리감독자는 회사의 조직 계통에 따라 생산관련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 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스텝(참모)조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법에서 정한 유자격자로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11.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13. 안전작업 표준지침의 작성 및 보완에 관한 사항
14.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생산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
8. 불안정한 작업방법의 개선
9. 불안정한 행동의 시정 및 지도
10.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11.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1조 【안전관리자】 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8.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업무담당자를 두어 안전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를 보좌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건관리자】 ①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5.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보건의의 업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7.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8.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9.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10.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1.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1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로 한정한다)

13.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업무담당자를 두어 보건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를 보좌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보건의】 ①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선임(위탁 포함)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4.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제1항의 산업보건의의 업무도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19조【작업지휘자】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해서 하는 작업

2.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또는 내리는 작업

②제1항의 작업지휘자는 해당 작업에 따른 떨어짐·떨어지는 물건에 맞음·넘어짐·끼임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한다.

③작업지휘자는 제2항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20조【교육의 구분】 ①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 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회사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해당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21조【교육담당자】 회사의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이하 “교육담당자”라 한다)는 안전 또는 보건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2조【책임】 ①전 직원은 교육대상에 따라 해당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각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계획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불참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담당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안전보건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회사는 소속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

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11. 안전·보건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달성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계·기구·설비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4. 각종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절차지침·기준 및 수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5.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제1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위촉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안전전문기관 사업장 담당자)
3. 보건관리자(보건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4. 산업보건의(보건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 의사)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부서의 장

제16조 【회의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록 작성·보존】 회사는 제1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8조 【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사내방송
2. 사내보
3. 게시판 게시
4. 자체 정례조회
5. 그 밖의 적절한 방법

나. 사무직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2. 교육내용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

가.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나.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사.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아.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카.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감독자 교육】 회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

제25조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작업 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간
 - 가. 채용시 교육 :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 나.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2. 교육내용
 - 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나. 작업 개시 전점검에 관한 사항
 - 다.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라.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26조 【특별안전보건교육】 ①회사는 유해·위험작업에 직원을 사용할 때에는 작업배치 전 해당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직원에서 교육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게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②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교육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 만큼 제23조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해당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대상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8조 【교육강사】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안전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3. 보건관리자(보건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4. 산업보건의(보건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 의사)
5. 관리감독자
6.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7.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 【교육방법】 회사는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현장교육 : 회사 내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3. 인터넷 원격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4. 전문화교육 :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업종 및 전문분야별로 개발·운영하는 교육

제30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회사에 선임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자체선임의 경우에 한정)
3. 보건관리자(자체선임의 경우에 한정)

제31조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 ①회사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교육 실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제32조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3조 【교육주기 등】 제30조에 따른 직무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수행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교육계획의 수립】 회사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12월 중에 익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 【교육관계 서류 보존】 교육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실시자
3. 교육과정
4. 출석인원
5. 교육내용
6. 그 밖의 교육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36조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12월 중에 익년에 실시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직원에게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진행사항을 알게 하여야 한다.

제37조 【안전보건진단】 ① 회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등】 ①회사는 사용 중인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목록을 작성·관리하고,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부위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설치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3.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4.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기계·기구 및 설비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의 종류 및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다.

1.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종류 및 방호장치는 관계법령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9조【성능유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8조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점검 및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직원의 준수사항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조치】 ①직원은 제38조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을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인증】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 가. 프레스
- 나. 전단기 및 절곡기
- 다. 크레인
- 라. 리프트
- 마. 압력용기
- 바. 롤리기
- 사. 사출성형기
- 아. 고소작업대
-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자.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나. 안전화
- 다. 안전장갑
- 라. 방진마스크
- 마. 방독마스크
- 바. 송기마스크
-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 아. 보호복
- 자. 안전대
-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 카. 용접용 보안면
-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

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경우
3.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42조【안전검사】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이하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이라 한다)에 대해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및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안전 검사합격증명서를 해당 기계·기구 또는 그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③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 등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 등

제43조【안전검사의 주기】 제4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등의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제44조【검사결과에의 조치】 안전업무담당자는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계·기구에 대해 사용중지 표찰을 부착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보수하며, 이와 같은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재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점검 및 순찰의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작업자는 자신의 소관 업무 및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및 순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제46조【안전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순찰을 실시하며, 안전순찰의 주기는 관리책임자는 1일 1회 이상,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1일 2회 이상으로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및 작업방법 도입 시와 기계·기구·설비의 수리 후에 사전에 위험성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점검방법】 점검자는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기계 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 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지체 일상 점검 상태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48조【점검결과에의 조치】 ①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계자를 경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부서장에게 발부하며 해당 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 조치한 후 즉시 안전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 및 보건전문기관 담당자의 점검결과 보고서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가 접수(중요사항 발견시는 직접 보고 가능)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전 및 보건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점검결과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직원에 대해 시정지시하여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점검 주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제49조 【안전기준】 회사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제정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0조 【표준안전작업지침】 ①회사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별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에 상응하는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작업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작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하는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때
3. 기계·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개조 등의 작업이 필요한 때

제51조 【안전수칙】 ①회사 내 작업간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 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수칙은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업무담당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③특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용접작업장, 보일러실, 인화성 물질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④안전수칙은 해당 작업 및 장소에 게시하여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전 직원은 이를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52조 【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회사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1일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위험물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화기 또는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주입·가열·증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근로자 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53조 【작업중지】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 ③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④모든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4조 【안전보건표지】 ①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및 장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작업장별로 정한다.

제55조 【중대산업재해 대응조치】 회사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제56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 점검】 ①회사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절차 도입, 그 절차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7조 【종사자 의견 청취】 ①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 5 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58조 【건강진단의 구분】 ①회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제5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회사는 상시 사용하는 직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직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직업병유소전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직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직원이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으로서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직원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

⑤회사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0조 【진단결과의 조치】 ①회사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개인표를 교부받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배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③회사는 제2항의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직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회사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직원이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 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제출한 건강진단 증명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1조【작업환경측정】 ①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62조【측정결과의 조치】 ①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제61조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유해물질 취급부서】 ①회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4조【유해물질 표시】 보건업무담당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제65조【보호구착용 작업 등】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에 지원을 종사하게 하는 경우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유기용제,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및 분진 취급 작업 :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12.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송기마스크
13.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 :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11. 진동작업 :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12. 기타 해당 관리감독자가 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에 대한 적정 보호구

②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 주기를 정하고 부서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여 확보토록 하되, 보호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③모든 직원은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④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안전인증번호, 보호구 수량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별로 비치하고 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⑤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보수하게 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⑥지급된 개인 보호구는 질병감염 우려가 없도록 다수의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케 해서는 안 되며, 개인 보호구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부서장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해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작업복】 ①회사는 직원에게 작업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에 적합한 작업모 및 작업복을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②모든 직원은 작업 중에 규정된 작업복 이외에는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작업복은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67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 ②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보건관리 전문기관 담당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8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①회사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 3.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 4.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고객응대근로자는 회사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

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9조 【보건기준】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하여 작업장의 조명, 정리, 정돈,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보건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0조 【보건수칙】 보건수칙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수칙”은 “보건수칙”으로, “안전업무담당자”는 “보건업무담당자”로 본다.

제 6 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71조 【도급의 승인】 ①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② 도급의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작업을 하도급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③ 1항의 작업을 도급 시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72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7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직원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직원과 관계수급인 직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 직원을 포함하여 100인 이상인 경우 지정한다.)

제74조 【수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① 회사(도급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정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②회사(도급인)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수급인 사업장은 회사가 취한 안전보건조치에 따라야 한다.
- ④수급인 사업장은 안전·보건조치가 되지 않은 작업을 회사가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회사는 수급인 사업장이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제75조【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직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② 회사는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6조【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제75조에 따른 작업을 할 경우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7조【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기준 절차】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3.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 7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78조【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①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보건업무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119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긴급조치】①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응급실에는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송 들것)와 응급용구 취급 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0조【비상연락망】회사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81조【사고조사 및 보고】①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안전관리자(안전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는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⑤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안전업무담당자(직업병 발생 시는 보건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82조 【재해분석】 ①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분기마다 해당 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1월 중에 전년도에 발생한 재해의 원인 및 부서 또는 작업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전 직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 8 장 근골격계질환 예방

제83조 【근골격계질환예방】 ① 회사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직원과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

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대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4조 【유해요인조사】 ① 회사는 직원이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유무 등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 회사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85조 【유해요인 조사 방법】 회사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직원과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 9 장 위험성평가

제86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87조 【위험성평가 교육】 회사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88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회사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

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있다.
- ③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④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제89조 【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5. 산업재해 발생
-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90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91조 【안전·보건 제언】 ①회사는 전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항상 연구하고 자율적으

로 제안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취합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전 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제안함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2조 【표창】 ①회사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수시 또는 안전보건 강조기간 행사 중에 표창 상신하여 시상함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동기를 유발토록 하여야 한다.

②표창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련 제안이 채택된 사람
2. 안전보건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제93조 【징계】 ①회사는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② 징계 요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사람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

제94조 【상별평가 기준 등】 ①표창 또는 징계 요구 시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및 손실금액
2. 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 실적
3. 안전수칙 준수 상태, 교육 및 안전활동
4. 직원의 참여 의식 및 이행 상태
5.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②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사내 상벌 규정에 따른다.

제95조 【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 이외의 모든 문서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6조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안전관련 다른 법률에 의한 소방안전관리규정 및 전기보안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97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회사는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8조【규정의 준수 등】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회사 내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이 규정을 모든 임직원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은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11 장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 · 보건관리 체제

(제7조 관련)

